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2호 2022. 3. 31.(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6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 사천시 고시 제2022-65호 2022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고시----- 2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429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7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456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사천시 고시 제2022-60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7-31(2017.2.16.)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0-31(2020.2.6.)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고시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사 업 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비고
진도도서 개발사업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6-15번지 일원	157,742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최초지정일 2017.2.16.

2. 해제사유: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로 인함

3. 해제일시: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5) 및 도시과(055-831-317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사천시 고시 제2022-65호

## 202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정화·정비를 위해 202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

## 사 천 시 장

1. 근거: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대상어장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

-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같은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아 어업 및 양식하는 수면

○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공유수면

3. 실시계획 추진방향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 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2022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 1. 목 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정화·정비로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 조성

### 2. 근거법령

-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3. 추진방향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 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 4. 대상어장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
-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공유수면

### 5. 어장정화·정비계획

-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사항
  - 양식어장 정화사업 우선 실시대상 어장
    - 어장의 장기 이용으로 생산성이 저하 및 해상 유류사고 등으로 저질 및 주변 수역이 오염된 어장

# 사 천 시 공 보

제 772 호

- 불규칙 개발 · 시설물 과다 설치로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육상기인 오염물 유입이 심하여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중 어장청소로 퇴적물의 처리가 곤란한 어장
- 기타 정화정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어업면허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어장

※ 2022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계획: 붙임 참조

- 어장정화사업 대상지 선정은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등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 다만, 다수 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한 개인어장과 주변수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 어장정화사업은 효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대상어장을 집단광역화하여 실시
  - 어장여건과 양식품종에 맞춰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준설 등의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시행
- 어장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 · 점검 강화
- 어업권자가 청소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청소 종료 후 확인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장관리대장 비치, 어장청소 이행사항 기록유지
- 양식어장 불법행위 지도단속
- 어장정화 · 정비를 통해 인양된 오폐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무면허 양식시설 및 초과 설치자, 유해약품 사용 어업권 등 불법 행위근절 지도
  - 양식물의 원활한 관리로 유실예방 및 투기 금지 홍보
- 어장정화 · 정비를 실시한 수면은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대책 수립 후 사후관리 실시
- 어업인이 폐어구를 수거 · 처리 할 수 있는 장소(이용 용이) 지정 · 운영
- 오폐물 중 닳 등에 대한 유상(무상) 처리 및 반출 시 감독관의 승인

#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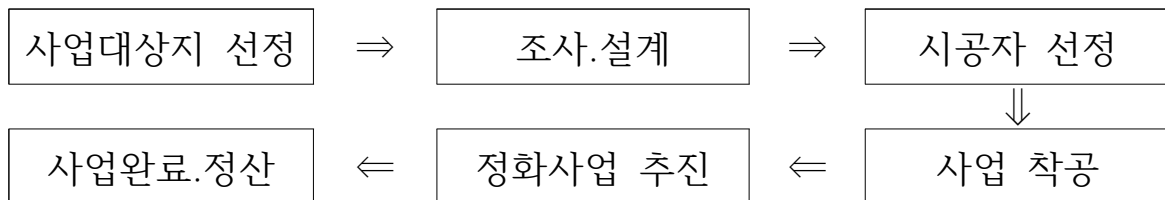
제772호

## 2022년 양식어장정화사업 추진계획

### 1. 사업개요

- 사업비: 125,000천원 [도비 86%, 시비 14%]
- 사업량: 100ha
- 사업지: 관내 3개 어촌계(송포, 용현, 구랑)의 어장정화사업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지 선정 및 전문업체 조사·설계에 따라 시행
- 사업내용: 어장 내 오폐기물 및 침적 폐기물 수거·처리, 어장경운 등 어장정화 작업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 2. 추진절차



### 3. 세부추진계획

- 조사·설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된 전문업체에 일괄 조사·설계 발주
- 사업시행: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중 사업자 선정(입찰) 및 사업 시행
  - 오폐물 수거·처리
    - 가연성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수리 후, 전문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 처리
    - 비가연성 및 폐각류 등: 전문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 조사·설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바닥갈이(경운) 실시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사업장 안전관리
  - 현장관리인, 안전관리인 자격소지자로 각 1명 선임
  - 사업장 수역 부표 설치(작업 권역별 구분)
  - 수협, 어촌계 등을 통한 홍보·지도로 인근 어장(어업)의 작업 저해 요인 사전 예방, 생육 양식물 보호,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등 사전 협의 후 추진
- 월별 추진계획
  - 조사·설계: 2022. 3월
  - 시공사 선정: 2022. 4월
  - 착 공: 2022. 5월
  - 준 공: 2022. 7월

## 4. 행정사항

- 조사·설계 용역발주: 회계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 된 전문업체 등
- 시공: 경남도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 어장 내 퇴적 오폐기물 수거 실시 및 시행 감독
  - 오폐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안전관리: 수협, 어촌계 등을 통한 홍보로 안전조업 확보
  - 시행 중 일일작업일지 작성, 비치
  - 사업시행 전·후 작업 대상어장의 품종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조사로 사업효과 분석

### ※ 어업면허 현황

(단위: 건,ha)

총 계		마을어업		협동양식		죽방림		패류양식		어류양식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10	2,544.57	35	2,063.96	6	64.92	21	4.90	42	402.59	6	8.20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사천시 공고 제2022-42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 사 천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대표자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주소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소하천명		남구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580번지 일원		
	면적	94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외구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용수로관 매설(D315mm) L=702m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사천시 공고 제2022-429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 사 천 시 장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8656호, 2021.12.28.)으로 감면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주민세 감면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 나. 취약계층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연장(안 제2조)

2)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조)

3)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8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2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3)

라. 코로나 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2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4)

마. 일몰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의5)

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안 제9조)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세무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8656호, 2021.12.28.)으로 감면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주민세 감면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 나. 취약계층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2)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조)
- 3)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
-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8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2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3)

라. 코로나 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2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4)

마. 일몰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의5)

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안 제9조)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3. 31. ~ 2022. 4. 2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2021년 7월”을 “2022년 7월”로 한다.

제8조의4 본문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8조의5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2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칩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 며, 2019년 6월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 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 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 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 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 2024년 12월 31일-----  
-----  
-----  
-----  
-----  
-----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2024년 12월 31일-----  
-----  
-----  
-----  
-----  
-----  
-----.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의4(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법」

-----  
-----  
-----  
-----  
-----  
-----  
----- 2024년 12월 31일 -----  
-----.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  
-----  
-----  
-----  
-----  
----- 2022년 -----  
----- 2022년 7월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  
-----

제75조제2항제1호의 개인에 대해서는 2021년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은 제외한다.

제8조의5(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 2022

년 -----

-----

----- . -----

-----

-----

----- .

<삭 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  
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  
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  
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  
원

② (생략)

세액공제) ① -----  
-----  
-----.

1. -----  
-----  
-----  
----- 250원
2. -----  
-----  
----- 500원

②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